

전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합33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 유한회사
可 고 유한회사 한풍제약
변 론 종결 2016. 5. 4.
판결 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1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에게 4,292,913,471원 및 그중 3,299,999,99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7.부터, 나머지 992,913,476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콘티테크'라고 한다)에게 7,08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의 관계

- (1) 원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및 기타자산운용 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이고, 원고 콘티테크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자동차부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2002. 4. 1. 설립된 회사이다.
- (2) 피고는 의약품 및 식품의 제조와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89. 1. 1. 설립된 회사이고, 앤아이씨 주식회사(이하 '앤아이씨'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전주시 덕진구 A 제1호 내지 제7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3) 원고 콘티테크는 2011. 07. 29. 앤아이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사무실 560㎡ 및 1층 창고 2,746㎡, 이하 '원고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피고는 2012. 8.31., 2013. 6. 13. 앤아이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창고 759㎡ 및 826.45㎡, 이하 '피고 창고'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 삼성화재와 원고 콘티테크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콘티테크는 2014. 01. 01. 원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보험종목 : PACKAGE (패키지보험) * 증권번호 : 제81393401800000호

* 보험계약자 :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주)

* 피보험자 :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유) 외 * 보험목적 혹은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내

콘티테크(유)의 사업장* 보험기간 : 2014. 01. 01. ~ 2015. 01. 01.* 보험가입내역(이하 '콘티테크'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Sec. I (PAR) : 제1부문(재산종합위험담보) :
KRW7,252,453,000 .-(EUR5,036,216 .-)- Sec.II(MB) : 제2부문(기계위험담보) :해당사항 없음.-
Sec. III(BI) : 제3부문(기업휴지담보) :KRW6,137,648,000 .-(EUR4,262,078 .-)
- Deductible : 자기부담금(제1, 3부문 포함) : KRW485,068,500 .-
(EUR350,000 .-)

다. 화재 사고의 발생

2014. 11. 29. 18:22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창고가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창고와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 사업장 및 그 내부 기계 등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콘티테크는 화재복구가 될 때까지 일체의 공장가동 및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라.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 콘티테크의 손해액

원고 삼성화재는 원고 콘티테크로부터 이 사건 화재사실을 통보받고, 손해의 평가 및 지급보험금 사정에 관한 전문기관인 CLK화재해상손해사정(주)에 손해평가를 의뢰하였는데,
CLK화재해상손해사정(주)는 원고 콘티테크의 추정손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재물손해 [이 사건 보험계약 Sec. I (PAR)으로 담보]

- 재조달가 기준 : 7,607,640,646원- 시가 기준: 5,090,530,067원

* 기업휴지손해 [이 사건 보험계약 Sec. III (BI)으로 담보]

- 3,798,265,071원

* 합계

- 재조달가 기준 : 11,405,905,717원

: 8,888,795,138원- 시가 기준

마. 원고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

원고 콘티테크는 원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고, 원고 삼성화재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원고 콘티테크에게 합계 8,881,708,61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2014.12.26. (1차 가지급보험금) : 3,299,999,995원(유로화 € 2,422,320.58)

* 2015.06.12. (2차 가지급보험금) : 3,000,000,009원

* 2015.11.24. (3차 잔여보험금): 2,581,708,610원

* 합계 (총 지급보험금)

: 8,881,708,61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9, 2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최초 피고의 창고에서 발생하였고, 그 화염이 원고 사업장으로 옮겨 붙음으로써 원고 사업장이 소훼되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화재의 연소확산에 관하여 피고 창고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 ② 피고 창고 및 그 내부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규정의 일반불법행위책임, ③ 피고 고용자들이 피고 창고의 관리를 해태한 것에 대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각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책임이 있다.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삼성화재는 원고 콘티테크에게 지급한 총 8,881,708,614원의 보험금 중 실화책임법에 의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 감경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4,292,913,471원, 원고 콘티테크는 발생한 손해액 중 원고 삼성화재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손해 중 우선 7,086,524원을 각 일부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공식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원인은 모두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고 창고에서 최초로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 창고가 발화지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창고에서 발화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3, 14, 1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뉴스보도된 사실, 화재발생에 대한 최초신고자 B, C등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창고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창고에서 발화되어 원고 사업장으로 옮겨 붙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전주덕진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전주덕진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관은 2014. 12. 3. 이 사건화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D과 한풍제약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임하였는데, 피고의 창고에는 약재가 자루에 포장된 상태 등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등기구 등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약재창고의 대부분이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이고, 약재가 연소, 이동된 상태이며, 검사 가능한 전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식별되지 않았고, D 창고는 대부분이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로서 사무실 등에 남아 있는 전기제품 등을 검사한 바 전기적인 특이 점이 식별되지 않고, 창고에 있었던 지게차를 검사한 바 내부에 배선된 전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광주과학연구소는 수사 자료의 목격자

진술을 요약하면 피고의 약재창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잠시 후 바로 불길을 보았다는 점, 피고 약재창고 출입문 쪽 안에서 불길이 보였다는 점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피고 약재창고 내를 발화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피고 약재창고 및 D 창고 등이 대부분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이고, 피고 약재창고 및 D 창고 등에 남아 있는 전선 및 전기제품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서, 이 사건 화재는 현장의 연소상태만으로 발화지점 및발화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란이 불가한 상태라고 감정하였다(을 제1호증).

②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조사자들은 2014. 11. 29., 2014. 12. 2., 2014. 12.14. 총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신고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창고 출입구 중앙 좌측부 등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나,화재건물이 강한 연소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등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며, 신고자 등의 진술이 시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발화 장소 등을 단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발화지점 및 요인을 단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사 결과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발화 관련기기 모두 '미상'이라고 하였다(을 제2호증).

③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E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광주과학수사소, 전주덕진소방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화재현장은 8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형태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중장비로 정리된 상태에서 최초 발화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붕괴된 구조물 내에 전기시설 및 전기배선 수거하여 조사해본 결과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인적 부주의 및 전기장치 및 시설에서 발화된 것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원인미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갑 16호증, 을 제3호증).

④ 전북전주덕진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범죄관련성 여부를 밝히기위하여, 신고자 및 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이 사건 건물 내 CCTV 확인 및 탐문수사,캡스(D 보안담당) 상대 수사, 화재발생 전날 피고 약재 하역작업 관련 확인수사, 범죄관련성 여부 탐문수사 등을 한 후 화재현장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화재 현장의 연소상태만으로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범죄관련성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다(을 제4호증).

(2) 덕진소방서 소속 조사자들은 '피고 창고 바로 옆은 D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 콘티테크 직원은 D 경계구역인 1F-16 표시등이 점등된 것으로 진술하였고,D(1F-16)과 피고 창고(1F-15)의

상단부는 방화구획으로 차단되지 않은 개방된 구조로 서 화재발생시 내부 연소형태 등 연기의 흐름에 따라 발화장소가 아닌 발화장소에 근접한 경계구역 등에 설치된 감지기에 감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표시등의 점등 등으로 발화지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2호증).

(3) 별지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D의 창고는 피고의 창고와 주식회사 F의 창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 외부에서 화재지점을 바라볼 때 D의 창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의 창고 입구 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반면 D의 창고 입구에는 창문이 없다.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B, C은 임대인인 앤아이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2316호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창고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도 그들이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지점에서 D 사무실이나 창고 내부를 볼 수는 없고, D 출입구 쪽에는 D에서 운행하는 탑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갑 제18호증).

또한 피고 창고와 D은 경계벽면이 단단한 내력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단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샌드위치 판넬로 이어져 있어 화재발생 시 화염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쉬운 구조인 점, 피고 창고에 마른 약재들이 보관되어 있던 점, D 사업장위 표시등이 점등된 점, D의 창고 및 사무실은 피고 창고의 좌측에 위치하여 있는데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화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창고 주변의 사업장(D 등)에서 발화된화재가 피고 창고로 옮겨 붙어 피고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화재가 D 창고 내부에서 먼저 발생하여 피고의 창고 부분에 옮겨 붙었을 경우에도, 목격자들은 피고의 창고 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성립여부

(1) 일반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창고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창고에서 발생하여 원고 콘티테크의 사업장으로 옮겨 붙은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 창고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책임근거로 거론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화재발생에 피고 또는 피고 피용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공작물하자에 대한 점유자 책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1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감식결과 발화요인, 발화열원,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기기등에 대해서 미상으로 결론지은 점, ② 피고가 피고 창고에 가연성 물질인 다량의 한약재를 보관한다는 사정만으로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창고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벽체 및 천장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방화구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피고 창고를 단순히 약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이용하면서 피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창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10개 정도의 전등을 사용하였을 뿐 전기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콘센트는 물론 어떠한 사유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난방기구 등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설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창고를 점유·보존함에 있어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봉규, 판사 김소연, 판사 유동균

별지



